

등록번호	GHS - 3AA - 004
페이지	1/12

# 1. 화학 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물질명): N-BUTYL ACRYLATE, INHIBITED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합성 섬유 와 피혁, 페인트
  - 코팅, 접착제, 부직포, 페인트, 유화제 등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 ㈜LG화학아크릴레이트공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451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061-680-6910
- 담당부서 : 3AA팀

# 2. 유해.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

- 인화성 액체: 구분 3 -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 3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2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2 - 피부 과민성: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 자극)

- 나.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위험



#### 550-200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63번지 팩시밀리 : (061) 680 - 6984 전화번호안내: (061) 680 - 6920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록번호	GHS - 3AA - 004
물질명 : BUTYL ACRYLATE CAS No. : 141-32-2	페이지	2/12

#### ○ 유해, 위험문구

H226 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1 흡입하면 유독함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응: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1+P312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특정 세척제의 사용이 권장된다면 응급처치요령을 참고하여) 정해진 처치를 하시오.

P333+P332+P313 피부 자극이나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62+P363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는 세탁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저장: P403+P235+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고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CAS No.: 141-32-2

페이지

3/12

#### 다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 : 보건: 3, 반응성: 2, 화재: 2

## 3.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wt%)
N-부틸 아크릴산, 억제된 (n-BUTYLACRYLATE,INHIBITED)	N-BUTYL ESTER BUTYL 2-PROPENOATE BUTYL 2-PROPENOIC ACID	141-32-2	>= 99.5
4-메톡시 페놀 (4-METHOXYPHENOL)	-	150-76-5	0.0015±0.0005
하이드로퀴논 (HYDROQUINONE)	히드로퀴논	123-31-9	0.00400~0.10000

# 4. 응급 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화학물질 눈 접촉 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렌즈를 제거하시오.
- 자극, 통증, 부기, 눈물, 눈부심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15분 이상 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 화학물질을 제거하시오.
-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제거하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
-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 다. 흡입 했을 때

-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비오염지역으로 옮기시오.
-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 라. 먹었을 때

- 물 혹은 우유 2-4컵을 섭취하게 하시오.
- 의식이 없으면 구토를 유도하거나 음료 섭취를 피하게 하시오.
- 의식이 있으면 수분 제거를 위해 구토를 유도하시오.
-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마신 경우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흡입:

단기간 노출: 호흡기 자극, 비강, 폐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노출: 비강에 자극, 눈과 코에 출혈과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 피부접촉:

단기간 노출: 홍반, 부종, 괴사와 같은 피부 자극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눈접촉:

단기간 노출: 각막 등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CAS No.: 141-32-2

페이지

4/12

##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비오염지역으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하며,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하되, 누출물질을 흡입한 환자의 경우 구강대구강법은 금물이며 포켓마스크 등 호흡 보조기구를 활용하시오.
-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시오.
-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요구조자를 보온, 안정시키시오.
- 노출(흡입, 섭취, 피부접촉)에 의한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 5. 화재. 폭발 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 소형화재: CO<sub>2</sub>, 분말 소화약제, 분무주수, 알콜포 소화약제
  - 대형화재: 알콜포 소화약제, 분무주수, 무상주수
- 부적절한 소화제 : 직사주수 금지
- 대형 화재 시 :
- 위험하지 않으면, 용기를 화재위험지역 밖으로 옮기시오.
- 내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하시오.
- 탱크/트레일러/열차 화물화재:
  -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화재진압 활동을 펼치거나 무인 방수장치를 사용하시오.
  -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 불가능할 경우 외곽으로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
  - 화재가 완전 진화될 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배출안전장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탱크의 변색이 있으면 즉시 철수하시오.
  -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 탄소 산화물(CO, CO₂등)
- 화재 및 폭발 위험
  - 고인화성: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될 수 있음
  -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기체가 될 수 있음
  - 열이나 화재에 의하여 폭발적으로 중합될 수 있음
  - 하수구로 유입된 물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음
  - 용기는 열에 의하여 폭발될 수 있음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면을 타고 확산되며 하수구/지하실/탱크 등 낮고 밀폐된 곳에 체류하므로 실내외 및 하수구에서 증기폭발의 위험이 있음
  -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 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 될 수 있음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보호구: 안전모, AIR CYLINDER MASK(공기 호흡기), 방화복(방열복), 내화학용 장갑
- 풍상에 위치하고 낮은 지역은 피하도록 하시오.
- 화재진압복은 화재 시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 입출하 또는 보관장소에 화재 발생시: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이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 만약 위의 사항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관계자 이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여수공장

물질명: BUTYL ACRYLATE

CAS No.: 141-32-2

페이지

5/12

- 탱크, 탱크트럭, 화물열차가 화재와 관련되면 반경 800m구역내의 접근을 차단하시오. (또한 반경 800m외곽으로의 초기대피를 고려한다.)
-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 물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음.
-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안전거리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릴 것)
- 수송물질 안내표지 및 적재서류 등을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관계회사에 연락하여 상세한 물질 정보를 구하시오.
- 화재진압수와 희석수는 부식성 또는 독성을 가지므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하시오.
  -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안전장갑: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 보호물질:고무, 네오프렌
  - 환기: 국소배기장치 설치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 호흡보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가스용),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유출지점으로부터 반경 50~100m이상 이격 시키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시오.
-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 대기 :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실시하시오.
- 토양 : 건조사, 흙 또는 기타 불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흡착한 후 용기로 옮기시오.
- 수중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 부근의 모든 점화원(담배불 또는 화염, 스파크)을 제거하시오.
  - 생성물질 처리장비는 반드시 접지 후 사용하시오.
  - 유출 물질과 접촉하거나 가로질러 다니지 마시오.
  - 위험하지 않으면 누출방지조치를 취하시오.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 증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건조한 흙, 모래 등 불연성 물질로 덮고 흡착하여 용기에 옮기시오.
  - 흡착물질 수거 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청결한 기구를 사용하시오.
- 다량 누출 시 :
  - 액체유출 전방에 둑이나 도랑을 만들어 가두고 나중에 처분하시오.
  - 분무주수를 통하여 증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밀폐장소내에서의 발화방지는 불가)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 노출지역을 격리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



/여수공장

물질명: BUTYL ACRYLATE

CAS No.: 141-32-2

페이지

6/12

# 7. 취급 및 저장

## 가. 안전취급요령

- 가압, 절단, 연마, 가열 등의 물리적인 충격과 용접, 납땜, 접합, 천공 등의 기계적인 가공을 하지 마시오.
- 불꽃발생 및 폭발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시오.
- 빈 용기 내 잔여물질은 위험하므로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용기를 처리하시오
- 용기의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 접지하시오.
- 전체환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활용한 환기를 실시하시오.
- 화학물질 사용 후 신체 및 의복을 세척하고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 분진, 증기, 미스트, 가스를 흡입하지 마시오.
- 취급 후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보호의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 밀폐용기에 저장하시오.
- 산화성 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원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TWA: 2ppm(11mg/m³) STEL: 10ppm(55mg/m³)
- US (NIOSH/OSHA AGGIH):
  - NIOSH- TWA: 10ppm(55mg/m<sup>3</sup>)
  - ACGIH- TWA: 2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합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오.
  - 폭발 위험이 있는 농도일 경우에는 방폭 설비가 갖춰진 환기장치를 설치하시오.
  - 작업공정이 노동부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되는 것을 사용하시오.
-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CAS No.: 141-32-2

페이지

7/12

# ○ 눈 보호

- 비산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하시오.
-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 손 보호

-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 신체 보호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 무색
나. 냄새	불쾌한 냄새
다. 냄새 역치	0.1ppb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64 °C
바. 초기 끊는점과 끊는점 범위	148 °C (DIN 51 751)
사. 인화점	29 °C (closed cup)
아. 증발속도	0.42 (초산부틸=1)
자. 인화성	인화성 액체
차.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하한: 1.7% 상한: 9.9%
카. 증기압	5.45mmHg (25 °C)
타. 용해도	1.4 g/L (20 °C)
파. 증기밀도	4.42 (air= 1)
하. 비중	0.898g/cm <sup>3</sup> (20 °C)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2.36
너. 자연발화 온도	267 °C (DIN 51 794)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0.81cp (25 °C)
머. 분자량	128.17g/mol



CAS No.: 141-32-2

페이지

8/12

## 10. 안전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증기가 공기와 혼촉하여 폭발성 혼합기체가 될 수 있음
  - 열을 방출하며 중합될 수도 있음
- 다. 피해야 할 조건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열, 화염, 스파크,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라. 피해야 할 물질
  - 할로겐, 과산화물, 시안화물, 염기, 산, 아민, 금속, 산화제
- 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 : 탄소산화물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단기간 노출: 호흡기 자극, 비강, 폐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노출: 비강에 자극, 눈과 코에 출혈과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 피부접촉:

단기간 노출: 홍반, 부종, 괴사와 같은 피부 자극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눈 접촉:

단기간 노출: 각막 등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 인화성 액체: 구분 3
  - 물반응성, 유기과산화물: 해당없음 (분자 구조상 관련성 없음)
  - "4.응급조치요령"의 "마.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을 참고하시오.
-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 경구 : 분류되지 않음 LD<sub>50</sub> = 3410 mg/kg bw (랫드)
    - 경피 : 분류되지 않음 LD<sub>50</sub> = 2054 mg/kg bw (토끼)
    - 흡입(증기) : 구분 3 LC<sub>50</sub>=10.3mg/L/4시간 (랫드)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구분 2
  - 토끼에게 노출시켰을 시 홍반, 부종, 괴사와 같은 보통 자극성 증상이 나타나며 인간에게도 홍반과 같은 자극성이 나타남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구분 2
  - 0.5ml BA를 노출시킨 결과 5마리 중 2마리에서 보통 자극성, 2마리에서 심각한 자극성이 나타남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구분 1
  - 기니피그를 이용한 maximization test, Freund's complete adjuvant test 결과 피부 과민증이 나타났으며 인간에게 patch test 결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증상이 나타남
- 발암성 : 분류되지 않음
  - IARC: Group 3, ACGIH: A4
  - NTP, OSHA, Regulation 1272/2008, US EPA: 해당없음



CAS No.: 141-32-2

페이지

9/12

- 2년 흡입시험 결과 가장 높은 농도인 135ppm에서 발암성에 관한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년 동안 흡입시험결과 사망률, 임상학적 증상, 몸무게는 변화가 없었으며 음식물 섭취는 감소하였음. 혈액학, 요검사, 총 병리학, 장기 무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NOEL=0.086mg/l
- 생식세포변이원성 : 분류되지 않음
  - 동물실험결과 시험관내 시험(염색체 이상시험, 소핵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부정기 DNA합성 시험, 자매염색체 교환시험)과 생체내 시험(세포유전학시험, 염색체 이상시험)은 모두 음성의 결과를 보였으므로 분류되지 않음

In vitro -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chromosomal aberrations test): 음성

소핵 시험 (micronuclei test): 음성

부정기 DNA합성 시험(unscheduled DNA systhesis): 음성

자매염색체 교환시험(sister chromatid exchange assay): 음성

In vivo- 랫드와 햄스터 흡입을 이용한 세포 유전학 시험(cytogenetic assay): 음성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chromosomal aberration test): 음성

- 생식독성 : 분류되지 않음
  - 랫드를 이용하여 배아 치사율 관찰 결과, 부모의 독성 때문에 신생아 무게가 감소하였으며 생존 가능한 태아가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음.(발달독성: NOAEL-100ppm 기형학: NOAEL-300ppm) 마우스를 이용하여 발달독성 관찰 결과 높은 용량에서 생존한 새끼는 없었으며 기형학적 영향이 관찰됨(모자독성: NOAEL-100mg/kg. 발달독성: NOAEL-1000mg/kg 기형학: NOAEL-2000mg/kg) 그러나 고용량에서의 영향으로 사료되므로 분류되지 않음
- 표적장기 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 자극)
  - 랫드의 호흡계에서 자극이 있음이 관찰되었으며 비강 분비물이 증가하고 점막에 출혈이 관찰됨
- 표적장기 전신독성 독성(반복 노출) : 분류되지 않음
  - 13주 흡입 노출 시, 눈 자극성과 비강막의 자극이 나타났으며 몸무게가 13.3% 감소함. 높은 농도에서는 40마리 중 31마리가 사망하였으며 눈과 코에 출혈과 심각한 호흡곤란이 관찰되었으며(NOAEL=108ppm LOAEL=211ppm) 13주 동안 경구 노출 시에 물 섭취량만 약간 감소하였으며 높은 용량에서 수컷 랫드에서 몸무게 증가가 관찰되었음. 비정상적인 혈액학, 임상학적 영향, 요검사, 조직학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음

NOAEL(drinking water study)=84(수컷), 111(암컷)mg/kg bw per day,

NOAEL(gavage study)=150mg/kg bw per day(암, 수컷))

체중 변화 및 국소 영향이 일부 관찰 되었으나 조직병리소견, 혈액학, 요검사등에서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분류되지 않음

○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수생 생태독성:
  - 수생 환경 유해성(급성): 분류되지 않음
  - 수생 환경 유해성(만성): 분류되지 않음
- 어류: 96hr-LC<sub>50</sub> (Salmo gairdneri) = 5.2mg/I (OECD TG 203, GLP)
- 갑각류 : 48hr-EC<sub>50</sub> (Daphnia magna) = 8.2mg/l
- 조류: 96hr-EC<sub>50</sub>(selenastrum capricornutum) = 2.3mg/I (OECD TG 203)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본 물질은 휘발성이 높고 광분해 반감기는 매우 짧아 환경 중의 잔류 가능성이 낮음
- 잔류성: log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Kow=2.36)
- 분해성 :
  - 가수분해: half-life pH3:2800days, pH7:1100days. pH11:243minutes
  - 광분해: half-life = 1.2days(estimated)



CAS No.: 141-32-2

페이지

10/12

- 다. 생물 농축성
  - 생체 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logKow가 4미만(logKow=2.36)이므로 생물 농축 잠재성이 낮음
- 생분해성 : 이분해성, 14일 후에 61%가 분해됨((OECD 301C, Modified MITI Test(I))
- 농축성: BCF = 37
- 라. 토양 이동성
  - Koc = 2.36L/kg으로 토양으로의 이동가능성이 낮음(logKow=2.36를 기초로 추정됨).

##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 소각하시오
  - 증발, 농축 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 14. 운송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348
- 나. 적정선적명: 아크릴산 부틸, 안정제가 첨가된 것.(BUTYL ACRYLATES, STABILIZED)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 라. 용기등급: Ⅲ
-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 시 비상조치: F-E
- 유출 시 비상조치: S-D

## 15. 법적사항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ℓ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할로겐족외의 폐유기용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R10, Xi;R36/37/38, R43
  - 위험 문구: R10, R36/37/38, R43
  - 예방조치 문구 : S2, S9



CAS No.: 141-32-2

페이지

11/12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해당없음 - SARA 313 규정 (40CFR372.65): 해당없음

- EPA (40CFR262): D001, D003 (유해 폐기물 번호)

○ 로테르담 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 스톡홀름 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규제대상 아님

## **16.** 기타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

- ECB-ESIS (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http://ecb.irc.it/esis)
-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IUCLID) (http://ecb.jrc.it/esi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SIDS)
-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s to Ma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972-PRESENT. (Multivolume work).. p. S7 216 (1987)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 Korea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gency: http://www.kosha.net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TLVs and BEIs.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Cincinnati, OH, 2008, p. 35
-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SDB):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htm)
- ECOTOX Database, EPA (http://cfpub.epa.gov/ecotox)
- ACGIH, TLV and BEIs # 0108, 2008
- The Estimation Programs interface (EPI) Suites, Syracuse Research Corporation
- http://www.safe.nite.go.jp/japan/sougou/data/pdf/hazard/hyokasyo/No-32.pdf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http://ncis.nier.go.kr)
- 소방방재청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http://hazmat.nema.go.kr)
- 나. 작성일자 : 2010년 6월 21일
- 다. 최초 작성 일자 및 개정 회수 : 1997년 1월 20일 (8차)
- 라.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 : LG화학, 한국산업안전공단



CAS No.: 141-32-2

페이지

12/12

#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6차	ALL	해당부서팀장 변경	2006.01.15	박찬교
7차	1.다	긴급연락 전화번호 변경 061-680-6983 →061-680-6920	2009.08.17	박찬교
8차	ALL	GHS규격통일	2010.06.21	박찬교
9차		-2.유해위험성 급성독성 구분 3에서 급성독성 구분 4로 변경 -경고표지 항목 변경 : "해골과 뼈" 그림문자 삭제 및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변경	2011.11.10	유슬빈
10차	1.다	공급회사 주소 및 긴급연락 전화번호 변경 061-680-6920 →061-680-6910	2014.02.27	곽병수